

소규모합병을 위한 반대의사 표시 기준일 공고

당사는 상법 제354조, 제527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3조 2항에 의거하여 2024년 11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케이지에스앤씨(주)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1. 명의개서정지사유	케이지에스앤씨(주) 흡수합병(소규모합병)
2. 기준일	2024년 11월 12일

2024년 10월 28일  
케이시모빌리티 주식회사  
대표이사 박 장 호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